

Int. Cl.
G 11 B 17/36

대한민국특허청(KR)

공개실용신안공보(U)

제 201 호

공개일자 서기 1988. 3. 15

공개번호 88-1283

출원일자 서기 1986. 6. 4

출원번호 86-7954

심사청구 : 없음

고안자 윤종수 경기도 수원시 이탄동 메판아파트 26동 403호

출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반형수

경기도 수원시 이탄동 416 번지

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VTR의 테이프 확인 장치

실용신안등록 청구의 범위

1. VTR에 있어서, 캐비닛 상판(1)의 한쪽에 거울용(2-1)이 형성된 반성면(2)을 리벳(2-2)으로 고정하고, 축(1-1)에 일단(3-1)부 일측이 고정된 반사경(3)의 타측에 형성된 축(3-2)에는 도일 스프링(4)의 탄성을 갖는 트럼장(5)을 연결하며, 캐비닛 상판(1)의 절곡부(1-3)가 일측인 절립편(1-2)이 형성된 다른부에는 건동(6)을 장착하며 구성된 VTR의 테이프 확인 장치.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는 본 고안요부의 측면도, 제 2도는 본 고안의 사용 상태 사시도.

